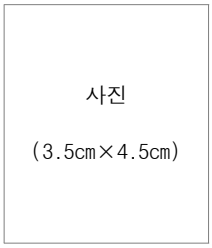
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5. 6. 16.>

제 호

조사직원증



소속: 양육비이행관리원 0000팀

성명: 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조사하는 직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양육비이행관리원장 [인]

앞면
54㎜×86㎜(플라스틱)

이 증을 지닌 사람은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

양육비이행관리원

대표번호 1644-6621

www.childsupport.or.kr

※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뒷면
54㎜×86㎜(플라스틱)